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45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11. 15.(금)

라. 회부일자 : 2019. 11. 15.(금)

2. 제안이유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¹⁾(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¹⁾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가. 출연 대상: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 나. 출연 필요성
 - 1)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금 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
 - 2) 구에서 위탁하는 문화예술시설 운영과 지역축제 등 위·수탁 및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 3)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 다. 출자금 규모: 5,223,887천원
 - ›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 2020 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의 · 의결

4. 참고사항

- 가. 출연금 편성내역, 지출예산총괄(부서별)
- 나.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운영재원)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금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금천구 문화 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기 위한 (재)금천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함.

O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률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 붙임 1) 출연금 편성내역 1부.
 - 2) 지출예산 총괄(사업별) 1부.
 - 3) 관계법령 1부.

붙임1

출연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 신	· 과목			2020년	2019년	증 감	비고
			계			5,223,887	4,839,106	384,781	
인	건	비		소	계	1,983,122	1,814,555	168,567	
	정	규	직	급	여	1,891,736	1,774,341	117,395	
	비	정	규 2	식 급	여	91,386	40,214	51,172	
퇴	직	급	여 종	등 당	금	161,800	149,834	11,966	
지	역 문	화	진 흥	사입	<u> </u>	655,556	684,285	△28,729	
독	서 문	화	진 흥	사입	법비	1,408,614	1,161,436	247,178	
일	반원	운 영	l II	소	: 계	1,014,795	1,028,996	△14,201	
	지	급	임	차	료	6,840	9,240	△2,400	
	사	무	관	리	비	119,124	110,803	8,321	
	차	량	유	지	비	1,080	1,080	_	
	보 (신	원	험 보 증	는 보	료 험)	1,300	1,300	-	
	지	급	수	수	료	11,964	11,964	_	
	공	공 요	- 금	및 저] 세	30,658	25,860	4,798	
	국	내		여	비	146,160	143,640	2,520	
	수	선	유	지	비	25,777	12,527	13,250	
	도	서	인	쇄	비	1,600	1,600	-	
	회	의	순	영	비	34,912	13,312	21,600	
	행	사	홍	보	비	15,500	5,000	10,500	
	보		상		금	8,000	_	8,000	순증
	업	무	추	진	비	10,800	9,000	1,800	
	관	서	업	무	비	8,420	7,220	1,200	
	교	육	<u>항</u>	련	비	11,605	7,096	4,509	
	복 (4	리 대	후 보 험	생 포	비 함)	345,120	354,928	△9,808	
	포		상		급	4,800	4,800		
	성 (기	관	과 경 영	· 평	급 가)	231,135	309,626	△78,491	

붙임2

지출예산 총괄(사업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20년	2019년	비교증감	Иа
					-
ğ	가	5,223,887	4,839,106	384,781	
001	경영지원팀	3,116,621	2,993,385	123,236	 인건비(예산편성) 준 인원[20] 적용 및 임류인상률 반영 117,395천원 평가급(2018년은 2017년 하반기분까지 편성) △ 78,491천원 직원 복지 리조트 예산 미편성 △ 34,000천원 재단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 12,000천원
002	문화사업팀	655,556	684,285	△28,729	 아트홀 공연전시비 증액 50,000천원 안전사고 방자를 위한 수선유지비 증액 18,960천원 금천하모니벚꽃축제 비용증액편성 18,800천원 문화통장 예산 증액 편성 15,000천원 빈집프로젝트 예산감소 △130,000천원
003	도서관 운영팀	842,524	650,772	191,752	 도서관 금나래도서관 청소용역 비용 1명분 추가 편성 42,000천원 금천청년사서 예산편성 95,553천원 플라잉북 유지보수 및 전산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비용 증가 21,900천원
004	독산도서관	168,274	155,649	12,625	 북스타트 사업 신규 편성 5,000천원 특화사업비용 예산증액 편성 5,000천원 도서관 노후화로 수선유지비 냉난방비 세관비등 편성 4,320천원
005	가산도서관	145,274	134,247	11,027	・ 북스타트 사업 신규 편성 5,000천원 ・ 특화사업비용 예산증액 편성 5,000천원
006	금나래 도서관	76,552	63,108	13,444	・ 북스타트 사업 신규 편성 5,000천원 ・ 특화사업비용 예산증액 편성 5,000천원
007	시홍도서관	175,990	157,660	18,330	 북페스티벌 운영비 증액편성 12,000천원 북스타트 사업 신규 편성 5,000천원 특화사업비용 예산증액 편성 5,000천원 꿈꿈프로젝트 예산 예산감액 편성 △5,000천원
008	정책실	43,096	_	43,096	 후원회 발족 및 운영 18,500천원 운영위원회 회의비 등 16,000천원

붙임3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 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1. 문화, 예술, 장학(樂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설립 목적
- 2. 주요 업무와 사업
-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유영재원)

-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출자·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출자·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출자·출연 기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 야 한다.